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4008

제출연월일 : 2024. 9. 13.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직거래 농산물 취급 실적 등이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그 명칭으로 인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오인될수 있고 현행법에 따른 인증의 대상이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증제도로 운영하기 보다는 지정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 목의"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 본법」 제3조제4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 장 인증"을 각각 "제21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으 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대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를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중에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을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이하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이라 한다)의 지정(이하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지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인증의 신청 등)"을 "(지정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 신청"을 "지정 신청"으로, "인증기준의 적합여부를"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인증 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는 지정 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변경인증"을 "변경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인증의 유효기간)"을 "(지정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사업자는 인증의"를 "지정사업자는 지정의"로,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 갱신을"을 "지정 갱신을"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인증의 표시)"를 "(지정의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사업자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을 "지정사업자는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임을"로,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인증된 것"을 "지정된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인증표시"를 각각 "지정표시"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인증의 취소 등)"을 "(지정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사업자"를 "지정사업자"로,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표시"를 각각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변경인증"을 "변경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인증표시"를 각각 "지정표시"를 각각 "지정표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의"를 "지정의"로,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인증의 사후관리)"를 "(지정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의"를 "지정의"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인증사업자"를 "지정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사업자"를 각각 "지정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인증심사 서류 보관)"을 "(지정심사 서류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를 "지정사업자는 지정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로, "인증심사"를 "지정

심사"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등)"을 "(지정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에"를 "제21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업무에"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인증기관"을 각각 "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인증"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기관"을 "지정기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호 중 "인증"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증기관"을 "지정기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22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 5. 제23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갱신
- 6. 제26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에 관한 사후관리 제32조제1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제1항·제4항·제5항 단서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인증 재심사, 변경인증 또는 인증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제4항·제5항단서 또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지정 재심사, 변경지정 또는 지정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3조(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제1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신청한 자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산물"이란 _ 「농어업・농	1 <u>「농업·농촌</u>
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제6호가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농업인"이란 <u>「농어업·농</u>	4 <u>「농업·농촌</u>
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을	제2호에 따른
말한다.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생산자단체"란 <u>「농어업・</u>	6 <u>「농업·농촌</u>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	<u>제4호</u>
체를 말한다.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제11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
의회 등의 설립) ① 지역농산물	의회 등의 설립) ①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	
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하을 신의하기 위하여 논립추	

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농 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 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생략)
- 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인증에 관한 사항
- 3. (생략)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 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 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생 략)
- 2. <u>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u>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
- 3. (생략)
- ③ (생략)

제6장 <u>우수 농산물</u> <u>직거래사업장의 인증</u>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
<u>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u>
3. (현행과 같음)
②
<u>.</u>
1. (현행과 같음)
2. <u>제21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u>
<u>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u>

- 3.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제6장 <u>농산물 직거래 우수</u> 사업장의 지정 제21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대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수 있다.

② <u>인증</u>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다.

제22조(인증의 신청 등) ①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사업자업 장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u>인</u> 증을 신청할 수 없다.
- 1. 제25조제1항에 따라 <u>인증</u>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제21조(동산물 식거래 우수 사업
<u>장의 지정 등)</u> ①
<u>농산</u>
물 직거래사업장 중에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을 지정할
<u>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이하 "농산물 직거
래 우수 사업장"이라 한다)의
지정(이하 제22조부터 제27조까
지에서 "지정"이라 한다)
제22조 <u>(지정의 신청 등)</u> ① <u>지정</u> -
<u>지정</u>
.
②
<u>ব</u>
<u>정</u>
1 <u>지정</u>

아니한 자

- 2. 제25조제1항에 따라 <u>인증표</u>
 <u>시</u>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 3. ~ 5. (생략)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u>인증 신청</u>을 받은 때 에는 <u>인증기준의 적합 여부를</u>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한 다.
- ④ 제3항에 따른 <u>인증</u>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라 <u>인증을</u> 받은 <u>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u> 는 인증 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u>변경인증</u>을 받아야 한다.
- ⑥ 그 밖에 <u>인증</u> 신청·심사·

2 <u>지정표</u>
<u>\(\)</u>
3. ~ 5. (현행과 같음)
③
<u>지정 신청</u>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④ <u>지정</u>
⑤ <u>지정을 받은</u>
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
는 지정 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
<u> </u>
<u>변경지정</u>
⑥ 지정

재심사 및 <u>인증</u> 변경 등에 필요 | ----- <u>지정</u>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한다.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 제23조(지정의 유효기간) ① 지정 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 ----- <u>지정</u>-----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 ② 지정사업자는 지정의 -----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 | 지정을 -----이 끝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 증 갱신을 받아야 한다. 정 갱신을 -----. 제24조(인증의 표시) ① 인증사업 제24조(지정의 표시) ① 지정사업 자는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 자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장임을 -----등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u>지정표시</u>---한다)를 할 수 있다. ② <u>인증을</u> 받지 아니한 자는 <u>인</u> ② <u>지정을</u> ----- <u>지</u> 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 정표시-----지 증된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정된 것-----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말 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

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u>인증</u>	<u>지정</u>
표시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표시
④ 그 밖에 <u>인증표시</u> 의 방법 및	④ <u>지정표시</u>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한다.	
제25조 <u>(인증의 취소 등)</u> ① 농림	제25조(지정의 취소 등) ①
축산식품부장관은 <u>인증사업자</u>	<u>지정사업자</u>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u>인증을</u>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	
에서 <u>인증표시</u> 의 제거·사용정	<u>지정표시</u>
지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할 때에는 <u>인증을</u> 취소	<u>지정을</u>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1
법으로 <u>인증</u> 을 받은 경우	<u>지정</u>
2. <u>인증표시</u> 의 제거·사용정지	2. <u>지정표시</u>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	
기간 중에 <u>인증표시</u> 를 한 경	<u>지정표시</u>
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제2항에 따른 <u>인증</u> 기	4 <u>지정</u>
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	
<u></u>	

- 5.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경우
- 6.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
 반하여 <u>인증표시</u>를 하거나 기
 준에 맞지 않게 <u>인증표시</u>를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u>인증의</u> 취소 및 <u>인증표시</u>의 제거·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 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의 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 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을 조사하거나 인증사업자에게 농 산물 직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해당 <u>인증사업자</u>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5
변경지
<u>년 8 기</u> <u>정</u>
6
<u>지정표시</u>
<u>지정표시</u>
② <u>지정의</u>
<u>지정표시</u>
제26조 <u>(지정의 사후관리)</u> ① <u>지정의</u>
<u>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u>
<u>업장</u>
<u>지정사업자</u>
②
<u>지정사업자</u>
<u>.</u>

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 증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 서는 아니 된다.
- ④ 그 밖에 <u>인증</u>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 제27조(인증심사 서류 보관)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 심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제2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

,
③
<u>\text{\text{Z}}</u>
<u>정사업자</u>
·.
④ <u>지정</u>
제27조(지정심사 서류 보관) ①
지정사업자는 지정의 유효기간
<u> 등을 고려하여</u>
<u>지정</u>
<u>심사</u>
.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지정기관의 지정 등) ① -
<u>제21조</u>
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
업장의 지정 업무에
<u>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u>
지정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u>한다)</u>
(a) -1 -1

- <u>기관</u>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인증</u>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u>인증기관</u>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u>인증기관</u>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3. 그 밖의 사유로 <u>인증</u>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④ <u>인증기관</u>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인증 취소

<u>기</u> 世
③ <u>지정</u>
기관
<u>지정기관</u>
<u>지정기관</u>
1
2
3 <u>농산물 직거래</u>
우수 사업장의 지정
④ <u>지정기관</u>
세29조(청문)
1.・2. (현행과 같음)
3.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 4.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 제30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 탁) ① (생 략)
 -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인증 및 제26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신 설>

<신 설>

- ③ (생략)
-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인증을

의 지정
4. <u>지정기관</u>
제30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
탁) ① (현행과 같음)
②
1. ~ 3. (현행과 같음)
4. 제22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
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5. 제23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u>갱신</u>
6. 제26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
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에 관
한 사후관리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벌칙)
1

받은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
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
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제34조(과태료) ①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③ (생 략)

2 <u> </u>
<u>정을</u> <u>지정표시</u>
제34조(과태료) ①
<u>지정표시</u>
②・③ (현행과 같음)